

예 술 인 의 지 위 와 권 리 의 보 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공포·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신고의 처리 과정을 규정(안 제2조)
-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3조)
- 다.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안 제4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예술인조합결성(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하되, 이하 “결성(변경)신고서”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2.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
3. 예술인조합의 명칭
4. 송달장소
5.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6. 조합구성원의 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결성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

된 결성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술인조합이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결성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결성된 것으로 본다.

⑤ 예술인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해산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결성(변경)신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 기관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본문 후단에 따라 건축
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 기관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신청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에 종사
하는 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8. 영 제10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권리보장 실태조사”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예술인조합 활동 등 예술 활동 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수
립과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발생원인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사항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 실태조사 또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예술인조합 [] 결성 [] 변경 신고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결성신고: 10일 변경신고: 10일
예술인 조합	명 칭	조합구성원의 수	
	송달주소	전화번호 (있는 경우)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전자우편주소	
특정 예술 활동	명칭	기한 (정해진 경우)	
특정예술 사업자 예술지원 기관	명칭	연락처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 예술인조합의 명칭 [] 예술인조합의 송달주소
	[] 대표자의 성명 [] 대표자의 주소
	[]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 특정 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의 명칭
	[] 예술인조합의 해산
	변경 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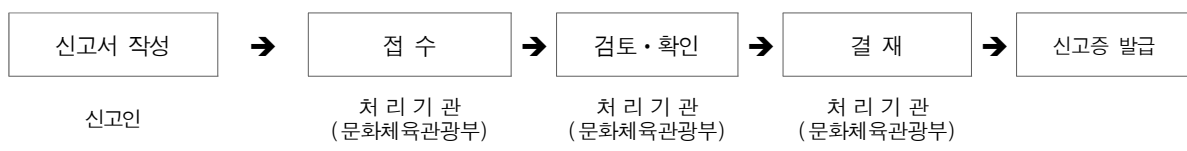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인 제출서류	결성신고의 경우	특정 예술활동 관련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	예술인조합 신고증 1부	

처리절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728